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사전에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2.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주거복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함
- **입주자격 검증**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7.01.20)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1.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공급호수	6,500호
대상주택	<p>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p> <p>※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p> <p>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p>
사업지역	<p>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음성, 제천, 청주, 충주, 진천, 단양, 영동,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천안, 홍성,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전주, 정읍,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포항,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제주, 서귀포)</p> <p>※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p>
지원한도액	<p>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p>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0% ÷ 12] = **126,660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325만원(기본 25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325만원) × 1.5% ÷ 12] = **58,4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50만원(기본 25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550만원) × 1.5% ÷ 12] = **55,62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3.01 ~ 2018.02.28)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3.01 ~ 2018.02.28)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금액 (2018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단위 : 원)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50%	2,501,290	2,923,450	2,923,450	3,110,000
70%	3,501,810	4,092,830	4,092,830	4,354,000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자가 총자산가액 1억7천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및 세대주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 접수 시 지자체 선택은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야 함)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8.02.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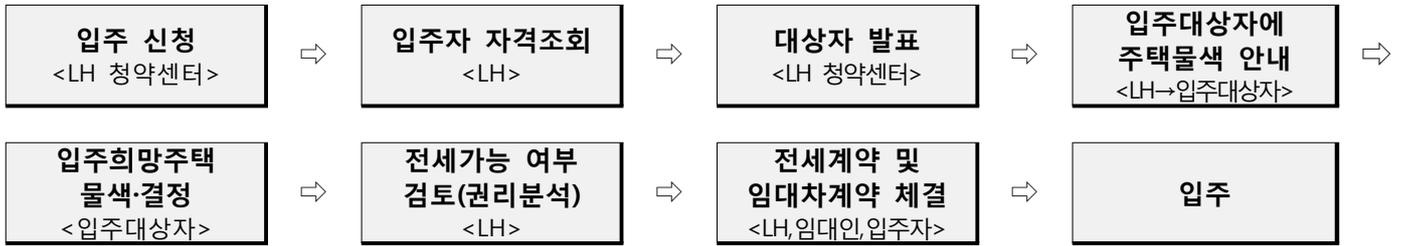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2점 1점
②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③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가. 3년 이내 나. 3년 초과 5년 이내 다. 5년 초과 7년 이내	3점 2점 1점
④ 공급신청자의 나이	가. 30세 미만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5세 이상	3점 2점 1점
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공급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여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⑦ 신청인의 당해 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⑧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⑨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18.3.19(월) ~ 3.30(금)

■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스캔(TIFF 형식)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파일크기 최대 230KB미만, 파일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함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첨부서류(TIFF파일로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되도록 발급)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대상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18.04.11까지 해당 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담당자 앞'으로 반드시 원본 우편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탈락 처리함

[모든 서류는 '18.0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명	설 명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②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당첨자 선정,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원본 제출
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원본 제출

⑥ 해당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준일 : 2018.02.28 (발급관리번호 : 2018980026)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인 외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첨부
----------	---

5.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장애인 가구 여부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함

6.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2018.06.27(수)**
- **장소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단,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기금대출 여부 확인 예외)
- 예비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배우자와 혼인 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당시 예비배우자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 이 취소**됨
-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
-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道) 및 이와 연접한 시군에서 가능하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 시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선정당시 사업대상지역과 혼인신고 후 실제 거주할 지역이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음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에는 지원 가능함
-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 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 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불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8.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구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www.lh.or.kr)

2018. 2. 28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670-2591 *문자상담 : 1670-2591 단, 45자 이내로 제한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1670-2592
인천지역본부	인천 경기서부(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051)460-5523~5528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053)603-2800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265, 3321, 3324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042)470-0700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033)258-4166, 4131, 412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 청주타워 7층	043)220-8890, 8891, 8893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422, 6389, 6191, 6390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1800-055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064)720-1036, 1039, 1038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 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자산항목 산정방법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	본인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 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 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00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